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 1. 회 부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04. 6. 18(금) 평창군수(자치행정과장)

나. 회부일자 : 2004. 7. 20(화)

다. 상정일자 : 제114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2004.7.21)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자치행정과장 신영선)

### 가. 제안이유

- 사회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토요일 휴무와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하고,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엄수 의무를 강화하고 토요일 휴무를 반영시키고자 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한 비밀엄수 조항 신설(안 제3조의 2)
- 토요일 휴무를 2004년 7월 1일부터 월 2회, 2005년 7월 1일부터는 전면 실시함(안 제16조의 2)
-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라 단축되는 근무시간보전을 위해 동절기(11월~2월)퇴근시간을 1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전일근무제를 폐지하며, 2006년 1월부터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함(안 제13조, 제16조 및 제18조)

- 산모의 보호 및 간호를 위해 배우자에게 부여하는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함(안 별표3)

###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박태영)

- 본 조례는 본격적인 주5일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 복무에 대한 관련조례를 시대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 현재 전국적으로 통일된 조례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불편등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또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평창지부에서 이와 관련하여 반대민원이 접수된 상태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 주민불편 및 행정자치부와 노조와의 갈등이 있는 조항중.

{※참조 : 【붙임 1·2】 }

#### - 먼저, 안 제3조의 2(비밀엄수) 조항을 보면

행자부에서는 공무원 및 공무원이었던 자의 공무상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조항을 강화하였지만, 노조에서는 공직개혁을 위한 내부고발자에 처벌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여지가 있으며, 또한 공무원 관련법 및 부패방지법에 이미 명시된 내용으로 신설이 불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 - 안 제13조(근무시간) 및 제 18조(연가일수)조항은

토요일 휴무확대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의 보전을 위해

동절기(11월~2월)에 17시까지 근무하던 것을 1시간 연장하여 18시까지 근무토록 하고 연가일수 또한 1일에서 2일까지 축소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가지 아쉬운 점은 본 조례가 공무원의 내부복무에 대한 사항을 개정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노조가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해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 기타 법령의 형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 연가일수를 1~2일 단축시킨 기준은?	○ 민간기업의 봉급수준과 비교하여 단축일수를 조정함.

#### 5. 심 사 결 과 : 수정의결

#### 6.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붙임 1】 : 강원도 시·군의회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현황 1부.
- 【붙임 2】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평창지부 의견서 1부.
- 【붙임 3】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끝.

## 강원도 시·군의회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 현황

시·군	제3조2항 (비밀엄수)	제13조 (동결기근무시간)	제18조 (연가일수)	비 고
강원도	삭제	표준안	표준안	수정의결
춘천시	표준안	표준안	표준안	원안의결
원주시	삭제	현행	현행	수정의결
강릉시	삭제	표준안	현행	수정의결
동해시	표준안	표준안	표준안	원안의결
태백시	삭제	현행	현행	수정의결
속초시	삭제	현행	표준안	수정의결
삼척시	삭제	현행	현행	원안의결 (집행부에서 수정)
홍천군	표준안	표준안	표준안	원안의결
횡성군	표준안	표준안	표준안	원안의결
영월군	삭제	표준안	표준안	수정의결
정선군	표준안보다 간단하게 신설	표준안	표준안	수정의결
철원군	삭제	표준안	표준안	수정의결
화천군	삭제	표준안	표준안	수정의결
양구군	표준안	표준안	표준안	원안의결
인제군	삭제	표준안	표준안	수정의결
고성군	삭제	현행	현행	수정의결
양양군	표준안	표준안	표준안	원안의결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 1. 제3조의 2(비밀엄수) 조항의 신설을 반대함

☞ 대인으로 내부 고발자 보호를 위한 규정의 신설

개정(안)	의견	반대 이유	비고
제3조의2(비밀엄수)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_____ 2. _____ 3. _____ 4. _____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는 공무원 관련법 및 부패방지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별도 규정 신설은 불필요하며,</li> <li>○ 자칫 부정부패 등 공직사회 내부고발을 더욱 어렵게 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으로 오용될 여지가 있으므로</li> <li>○ 현행 법령 상 비밀의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li> <li>○ 부패방지 위원회에서 권장하고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진중인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규정 신설이 더 필요 함.</li> </ul>	

## 2. 제13조(근무시간) 및 제 18조(연가일수) 조항의 개정을 반대함

개 정 (안)	의견	이 유	비고
제 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도입된 주 5일제 취지에 반하여,</li> <li>○ 다른 노동 조건을 후퇴시킴으로써 주 5일 근무제 시행전과 별반 다를 바 없거나 오히려 열악해진 노동환경에서 공무원의 노동을 강요하려는 것은 공무원 노동자를 우롱하는 처사임</li> </ul>	

개 정 (안)	의견	이 유	비고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p>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hr/> <hr/> <hr/> <hr/>	반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산망 및 FAX를 이용한 각종 민원 발급 등 전자정부 정착으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동절기 근무시간의 연장은 민원 불편을 빌미로 막대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전시 행정적 요소가 있으며,</li> <li>○ 중식시간에도 전화대기나 민원을 응대해야 하는 지방공무원의 근무실태는 근로기준법상 근무시간으로 간주되므로 1일 9시간을 근무하여 1일 8시간으로 정한 법정 노동시간을 초과함.</li> <li>○ 따라서 중식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할 것인가 또는 근무시간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먼저 제시되어야 할 것임.</li> <li>○ 특히, 산불, 재해복구 등 각종 비상근무와 당직 근무에 동원되는 지방공무원의 현실을 무시하고</li> <li>○ 객관적 기준 없이 일률적으로 연가일수를 1~2일 축소하는 것은 공직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권위주의와 탁상행정의 표본으로 볼 수 있으며,</li> <li>○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에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정부와 부산시가 도리어 공무원의 노동 조건을 통제하여 중소기업 노동자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저의로 의심 됨.</li> <li>○ 따라서 평창군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 5일 근무제를 적극 받아들이고, 숭선하여 시행해야 할 것임</li> </ul>	

### 3. 종합의견

- 금번 조례 개정은 공무원관련법 및 부패방지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직무상 비밀엄수의 의무를 별도의 규정으로 신설하여 공직사회 내부비리를 고발하려는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공무원에게 비밀엄수 의무를 강제하고 처벌하려는 반역사적 반개혁적인 사항이며,
  
- 주 5일제 도입의 취지는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근로시간 및 휴가 제도를 국제적 기준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에도, 시행전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노동환경에서 공무원이 복무토록 하려는 것은 진정한 선진국형 주 5일제가 아니라 근무형태만 바뀌는 “무늬만의 주 5일 근무제”에 불과함

### 4. 기타의견(5번 항목 참고)

- 주 5일 근무제를 전면 시행 할 경우 추가 휴일은 년 51일(204시간) 정도이나 복무조례 개정 시 근무 일수가 년 33일(132시간) 정도 늘어나 실제 추가되는 휴일은 년18일 정도로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하지 않고 년 12회(월 1회) 휴무하고 있는 현재(2004. 5)와 별반 차이가 없어 주 5일 근무제 도입의 근본적인 취지를 곡해 할 뿐 아니라 주 40시간 근로제에도 미치지 못하는 눈속임에 불과함.
  
- 또한, 공휴일 및 야간에 비상 동원이 많은 지방직공무원과 국가직공무원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 제기로 지방직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또 다른 노사 분쟁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될 것임.
  
- 특히, 동절기 1시간 연장 근무는 천연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에너지 절약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 중인 정부의 방침에도 역행하는 사항 임.

### 5. 참고자료

가. 단계적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라 단축되는 연간 근무시간

- 1) 2004. 7. 1 ~ 2005. 6. 30(월 2일 토요일 휴무)
  - 월 2일 X 4시간 X 12개월 = 96시간
- 2) 2005. 7. 1 ~ (전면 주 5일 근무)
  - 51일 X 4시간 = 204시간

**나. 복무조례 개정시 늘어나는 연간 근무시간**

- 1) 2004. 7. 1 ~ 2005. 12. 31 (= 116시간 ~ 132시간 ≒ 124시간)
  - 동절기 4개월(11월~2월) : 매일 1시간 X 25일(1개월) X 4개월 = 100시간
  - 공휴일 축소 2~ 3일 : 8시간 X 2일~3일 = 16시간~24시간
- 2) 2006. 1. 1 ~ (124시간 ~ 140시간 ≒ 132시간)
  - 동절기 4개월(11월~2월) 매일 1시간 X 25일(1개월) X 4개월 = 100시간
  - 공휴일 축소 8시간 X (2일~3일) = 16시간~ 24시간
  - 연가일수 단축 8시간 X (1일 ~2일) = 8시간 ~ 16시간

**다. 실제 변동되는 연간 근무시간**

- 2004. 7. 1 ~ 2005. 6. 30 : 124시간 - 96시간 = 28시간 확대
- 2005. 7. 1 ~ 2005. 12. 31 : 124시간 - 204시간 = 80시간 단축
- 2006. 1. 1 ~ 계속 : 132시간 - 204시간 = 72시간 단축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4년 7월 21일

제안자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1. 수정사유

제3조 2항(비밀엄수) 신설조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부패방지법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제13조 1항 동절기 근무시간 연장과 제18조 연가 일수 축소는 본격적인 토요일휴무제가 실시되기까지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므로 그때까지는 합리적인 조정안이 나올 때까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함.

## 2. 주요골자

- 비밀엄수 조항을 삭제함(안제3조의 2).
-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대한 사항은 현행대로 함(안제13조의 1항).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를 종전 규정대로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로 수정
-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란을 현행대로 함(안제18조 1항).

#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평창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의2를 삭제한다.

안 제13조의제1항중 본문을 (현행로 하기 위하여)을 다음과 같이 하고 단서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3조(근무시간)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

안 제18조제1항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근 속 기 간	연가일수
3월이상 6월미만	4
6월이상 1년미만	7
1년이상 2년미만	10
2년이상 3년미만	13
3년이상 4년미만	16
4년이상 5년미만	19
5년이상 6년미만	22
6년이상	23

#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p>&lt;신 설&gt;</p>	<p>제3조의2(비밀업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li> <li>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li> <li>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li> <li>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li> </ol>	<p>&lt;삭 제&gt;</p>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요일근무제를 실시하는 경우 17시, 토요일일근무제를 실시하지 아니 하는 경우 13시로 한다.</p> <p>②중식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중식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p>②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에는 점심시간을 두지 아니한다.</p>	<p>제13조(근무시간) ①공무원의 근무시간은 3월 1일부터 10월 말일까지는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고, 11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는 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의 종무시간은 13시로 한다.</p> <p>② &lt;개정안과 같음&gt;</p>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p> <p>①주민편익의 증진과 업무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월1회 동시에 휴무하게 하거나, 2개조로 나누어 교대로 또는 소속공무원 전원을 격주로 전일근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p>	<p>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군수는 토요일에 소속 공무원을 동시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p> <p>②토요일휴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p>	<p>제16조의2(토요일휴무제) ① &lt;개정안과 같음&gt;</p> <p>② &lt;개정안과 같음&gt;</p>																																				
<p>제18조(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p> <table border="1" data-bbox="123 891 489 1254"> <thead> <tr> <th>재직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3월이상 9월미만</td><td>4일</td></tr> <tr><td>6월이상 1년미만</td><td>7일</td></tr> <tr><td>1년이상 2년미만</td><td>10일</td></tr> <tr><td>2년이상 3년미만</td><td>13일</td></tr> <tr><td>3년이상 4년미만</td><td>16일</td></tr> <tr><td>4년이상 5년미만</td><td>19일</td></tr> <tr><td>5년이상 6년미만</td><td>22일</td></tr> <tr><td>6년이상</td><td>23일</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9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p>제18조(연가일수) ①----- -----.</p> <table border="1" data-bbox="523 891 879 1254"> <thead> <tr> <th>재직기간</th> <th>연가일수</th> </tr> </thead> <tbody> <tr><td>-----</td><td>3일</td></tr> <tr><td>-----</td><td>6일</td></tr> <tr><td>-----</td><td>9일</td></tr> <tr><td>-----</td><td>12일</td></tr> <tr><td>-----</td><td>14일</td></tr> <tr><td>-----</td><td>17일</td></tr> <tr><td>-----</td><td>20일</td></tr> <tr><td>-----</td><td>21일</td></tr> </tbody> </table>	재직기간	연가일수	-----	3일	-----	6일	-----	9일	-----	12일	-----	14일	-----	17일	-----	20일	-----	21일	<p>제18조(연가일수)① &lt;현행과 같음&gt;</p>
재직기간	연가일수																																					
3월이상 9월미만	4일																																					
6월이상 1년미만	7일																																					
1년이상 2년미만	10일																																					
2년이상 3년미만	13일																																					
3년이상 4년미만	16일																																					
4년이상 5년미만	19일																																					
5년이상 6년미만	22일																																					
6년이상	23일																																					
재직기간	연가일수																																					
-----	3일																																					
-----	6일																																					
-----	9일																																					
-----	12일																																					
-----	14일																																					
-----	17일																																					
-----	20일																																					
-----	21일																																					
<p>②~③ (생략)</p> <p>[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123 1528 489 1607"> <thead> <tr> <th>구분</th> <th>대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출산</td> <td>배우자</td> <td>1</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	<p>②~③ (현행과 같음)</p> <p>[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data-bbox="523 1528 879 1607"> <thead> <tr> <th>구분</th> <th>대상</th> <th>일수</th> </tr> </thead> <tbody> <tr> <td>출산</td> <td>배우자</td> <td>3</td> </tr> </tbody> </table>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3	<p>②~③ (현행과 같음)</p> <p>[별표 3]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lt;개정안과 같음&gt;</p>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1																																				
구분	대상	일수																																				
출산	배우자	3																																				